

부천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관세면제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적) 이 조례는 종교단체(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. 이하 같다)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면제대상)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. 다만,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

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3 조(면제신청)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.

제 4 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의안번호 : 107

제안년월일 : 1992. 8.

제안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92 새마을이동도서관 확대운영 계획(내무부 국지 27074-12482) 및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(내무부 국지 27074-188)에 의거하여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영속적인 지원근거를 마련 하므로써,
- 독서를 통한 올바른 사회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 건전사회 기풍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(§2)
 - ➔ 시장이 새마을 문고 부천시지부 회장에게 위탁 운영·관리
- 이동도서관의 사업(§3)
 - ➔ 주민에게 무상으로 도서 대여 및 독서진

홍운동 전개

-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(§4)
 - ➔ 6내지 10명으로 구성
 -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명 (새마을과장 : 당연직)
 - 새마을문고 지도자 (2명이상)
 - 기타 독서분야에 식견이 높은자 (3명이상)
- 이동도서관 운영비 보조(§5)
 - ➔ 시장이 새마을문고 부천시지부 회장에게 보조
- 이동도서관 직원임용 (§6)
 - ➔
 - 임용절차 : 부천시지부 회장이 시장과 협의후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받음.
 - 인건비 지급기준 :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급여규정 준용

○ 지도·감독체계 (§7)

- ➔ 시장 및 도지부 회장이 시문고 지부 회장을 지도·감독

○ 이동도서관 운영세칙 (§7)

- ➔ 새마을문고 중앙회 회장이 규정

부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(안)

제 1 조(목 적) 이 조례는 부천시 새마을 이동도서관(이하 “이동도서관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설치 및 관리)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 부천시지부(이하 “문고지부”라 한다)회장에게 위탁한다.

제 3 조(사업)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
1.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
2. 독서상담 및 자문
3. 국민독서진흥운동의 전개
4. 이동도서관 운영에 따른 조사, 연구 및 홍보
5.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부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은 사업

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.

제 4 조(운영위원회)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(이하 ‘운영위원회’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위원장은 문고회장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.

1.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
2.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이상
3.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이상

제 5 조(예산 및 결산)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부천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.

②문고지부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④문고지부 회장은 부천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⑤문고지부 회장은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6 조(직원임용)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 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.

②이동도서관에는 1개차량당 사서1명, 운전원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.

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 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급여규정을 준용한다.

제 7 조(지도·감독) ①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 및 운영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②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로 정한다.

③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조
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 중앙회장이 별도
로 정하는바에 의하여 문고지부 회장을 지

도: 감독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1992년 원 일부터 시행한다.

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번호 : 109

제안년월일 : 1992. . .

제안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내부부세제 22670-228('92. 7. 28)호 및
경기세정 22670-1328('92. 7. 31)호에 의
거 조례준칙 시달
- 도서관진흥법에 의해 설립·등록되는 시설
로서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
한 세제지원으로 사회교육진흥을 유도코자
함.

□ 주요골자

- 근거법규 : 지방세법 제7조 제1항, 동법 제9
조
- 면제대상 : 기존면제대상중 “도서관진흥법의
적용을 받는 도서관”을 추가 신
설
- 면제세목 :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
- 적용시한 :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
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

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부천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
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도서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

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시행기간)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
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	행	개	정	안
제 2 조(면제대상)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 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 하여 재산세, 종합토지세, 도시계획세를 면 제한다. 다만,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겸용 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그 겸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 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		제 2 조(면제대상) 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 —————		
1.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		1. (현행과 같음.)		
2.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 동교육원		2. (")		